

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5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0월 18일  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양민규, 유 용, 송아량, 김경우,  
김상훈, 김 경, 황인구, 이승미,  
노승재, 박순규, 정진철 의원(11명)

## 1. 제안이유

종전에는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·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,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출자,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·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 수당 등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,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“민간임대주택”을 “민간건설임대주택”으로 함(안 제2조제4호, 제16조 제목 및 제1항~2항).
- 나. “기업형임대주택”을 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”으로 함(안 제2조제5호 및 제11호~12호).
- 다. “준공공임대주택”을 “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”으로 함(안 제2조제6호, 제4조제1항, 제12조제6항).
- 라.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23조제4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“250m”를 각각 “250미터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25m”를 “25미터”로, “250m”를 “250미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“민간임대주택”을 “민간건설임대주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업형 임대주택”을 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준공공임대주택”을 “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“기업형임대주택”을 각각 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민간임대주택으로”를 “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자치구청장”을 “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자치구청장에게”를 “구청장에게”로, “자치구청장은”을 “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후단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준공공 임대주택”을 “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”으로 한다.

제16조 제목“(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)”을“(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“민간임대주택의”를“민간건설임대주택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“민간임대주택”을“민간건설임대주택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4항 중“1회에 한하여”를“한 번만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본문 중“소집하고자 하는”을“소집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“대하여는 예산”을“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”으로 한다.

제24조 제목“(위원의 해촉)”을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“해촉”을“위촉을 해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대중교통중심 역세권”(이하 “역세권”이라 한다)이란,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</p> <p>가. 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. 이하 “역”이라 한다)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<u>250m</u> 이내의 지역</p> <p>나.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<u>250m</u> 이내의 지역</p> <p>다. 폭이 <u>25m</u>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<u>250m</u> 이내의 지역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4. “<u>민간임대주택</u>”이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50미터</u> ----- -----</p> <p>나. ----- ----- <u>250미터</u> ----- -----</p> <p>다. -- <u>25미터</u> ----- ----- <u>250미터</u> 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<u>민간건설임대주택</u>”----- -----</p>

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. 다만, 준주택(오피스텔) 및 단기임대주택은 제외한다.

5. "기업형임대주택"이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.

6. "준공공임대주택"이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.

7. ~ 10. (생략)

11. "통합심의위원회"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말한다.

12. "촉진지구"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한다.

제4조(사업시행자) ① 청년주택 사업시행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한다.

1. (생략)

2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시행자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건

-----  
-----  
-----.

5.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-----  
-----  
-----.

6.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-----  
-----  
-----.

7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-----  
-----  
----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-----  
-----.

12. -----  
-----  
----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-----  
-----.

제4조(사업시행자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-----  
----- 민간  
건설임대주택으로 -----

설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 
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

② (생략)

제9조(사업계획의 결정절차) ①·②  
(생략)

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  
립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 
관계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과  
협의하고,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  
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 
라 관보 또는 시보에 고시하고 관  
계 서류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송  
부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10조(사업계획의 취소 등) ①·②  
(생략)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주택  
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  
보에 고시하고 자치구청장에게 통  
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자치  
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  
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 
한다.

④ (생략)

제12조(도시·군관리계획 규제 완

-----  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업계획의 결정절차) ①·②  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자치구청장(이  
하 "구청장"이라 한다)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업계획의 취소 등) ①·②  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구청장에게 -----  
----- 구청장  
은 -----  
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도시·군관리계획 규제 완



및 선정방법, 임대료 책정 및 나눔  
카 도입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 
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  
다.

제21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~ ③  
(생략)

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  
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(생  
략)

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통합심의  
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 
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 
·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 
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  
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  
하지 아니하다.

③ (생략)

④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 
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 
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 
있다.

⑤ ~ ⑦ (생략)

제2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제20조

-----  
-----  
-----.

제21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~ ③  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한 번만 -----.

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(현행  
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소집하려는 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대하여는 「서울특별  
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  
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-  
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

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「민간임대  
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9  
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-- 위촉을 해제-----.